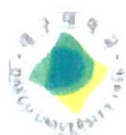

업 무 협 약 서

대구대학교 대구메리어트호텔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

MARRIOTT
DAEGU

대구대학교 (이하 "학교"라 한다)와 대구메리어트호텔 (이하 "호텔"이라 한다)은 대구대학교 교직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 및 호텔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조 [목적]

본 협약은 각 기관간의 상호교류 및 편의제공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[대상]

본 협약에 따라 호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 및 그 가족으로 한다.

제 3조 [이용 내용]

대학교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.

객실 타입	주중(일~목)		금요일		주말/공휴일	
	객실	객실+1인조식	객실	객실+1인조식	객실	객실+1인조식
디럭스 킹 / 더블	170,000	195,000	185,000	210,000	250,000	275,000
엠클럽 킹 / 더블	N/A	230,000	N/A	245,000	N/A	310,000

*상기 요금에 10% 부가세 발생

제 4조 [예약 변경 및 취소]

대학교의 이용자는 예약을 변경 및 취소할 경우 호텔의 예약 및 이용 규정에 따르며, 호텔은 시설물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5조 [협약 기간 및 해지]

1.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, 상호 간 별도 해지 통보가 없을 시에는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.
2. 각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협약을 해지할 시에는 상대방에게 해지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6조 [협력 및 교류 방안]

1. 각 기관은 본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협력 내용의 효율적 추진과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상호 교류하며 업무를 추진한다.
2. 협력 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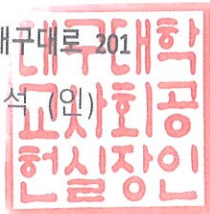
제 조 [기타]

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 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각 기관의 합의를 통해 조정한다.

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 한다

대구대학교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사회공헌실장 고 의 석 (인)



대구메리어트호텔

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6 길 6

주식회사 제이스글로벌 (인)

502-86-22178

주식회사 제이스글로벌 전용사

대구 메리어트 호텔

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6길 6

숙박업 호텔업
음식점업 레스토랑